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공고

① ‘예외 없는 부적격’ 심사기준

[예외 없는 부적격] 심사기준		
사유	내용	적용 기준
강력범	살인, (고의범죄가 결합된)치사, 강도, 방화, 약취유인, 마약류, 살인미수, 범죄단체 등 구성·가입·활동 등	미성년일 때의 범죄의 경우, 본인 소명 후 공판위에서 판단
파렴치 범죄	음주운전(측정거부 포함)	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,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(18.12.18.) 음주운전 적발 시
	빵소니 운전	특가법 적용 ‘도주운전자’
성폭력 범죄 등	강간죄, 강제추행죄, 강제유사성교행위,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,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형사처분 시 (기소유예 포함) · 소속기관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 시 (민사 손해배상 포함) ·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성폭력·성매매범죄로 제명된 자 ※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※ 형법 242조~245조
	<성폭속 범죄> 통신매체 이용음란, 카메라 등 이용 촬영, 음행매개, 음화반포, 음화제조, 공연 음란,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·배포,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	
	<디지털 성범죄> 촬영물 등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·전시·상영, 촬영물 등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, 허위 영상물(딥페이크 포함) 등의 제작·편집·합성·가공,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·전시·상영, 촬영물 등의 이용 협박·강요,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	
성매매 범죄	성매매 행위, 성매매 알선·권유·유인·강요, 성매매 장소 제공, 성매매에 제공되는 자금·토지·건물 제공행위, 성매매 목적 약취·유인, 인신매매 등	
가정폭력	「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가정폭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형사처분 시 (기소유예 포함) ·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가정 폭력·아동학대로 제명된 자
아동학대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 (제17조 금지행위)	
투기성 다주택자	가구 당 다주택 보유자 중 아래와 같이 예외 사례를 규정해 투기성 여부 판단	

△ 투기성 다주택자 구체적 예외 적용례 규정

1. 부모 실거주 주택

- 주택 매입 시점과 거주기간 등을 고려, 주민등록등본 등 입증자료 제출

2. 부모로부터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 중 생가, 연고가 있는 농촌 소재 (면단위) 주택

- 등기부등본 등 입증자료 제출

3. 해외소재 주택

- 취업 등의 사유로 실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

4. 기타

- ‘민간임대주택’에 관한 특별법 임대기간의무(단기 4년, 장기 8년)
 -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·‘부동산거래신고법’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 (계약기간 연장 2년)
 - 수도권과 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) 및 그 외 지역을 구분해 투기 성격 판단
 - 그밖에 투기성 목적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 (실거주, 임대업 등록 여부 등)
-

② ‘부적격’ 심사기준

[부적격] 심사기준		
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자	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(단, 공직임용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)	최근 4년 이내 최고위원회 및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고당부(사고위원회)를 판정한 경우
징계 경력 보유자	제명(제명에 준하는 징계 포함), 당원자격정지	· 제명 : 징계 확정 기준 5년 · 당원자격정지 : 징계 종료 기준 3년
상습 탈당 경력보유자	직업상 이유 이외에 상습적으로 탈당한 자	· 3회 이상 탈당한 자 · 단, 직업상 이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※ 더불어민주당, 더불어민주당연합 입당으로 인한 탈당 경력 제외
당 결정 및 당론 위반 경력자	공천불복경력자, 당정협력 일절 불응자,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	· 공천 불복, 당정협력 일절 불응에 따른 징계 경력, 당론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 ※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 : 당에 예비후보자 자격검증 및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신청한 자 ※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 : 심사/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불복 행위(기자 회견, 타당 입당, 무소속/타당으로 출마 등)를 한 자 ※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: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받은 자
부정부패	뇌물, 알선수재, 공금횡령, 조세관련법, 변호사법, 자본시장법 등 위반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, 조세법 처벌법 위반, 고액·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선거 관련	선거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(※본인의 선거운동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)
파렴치 및 민생범죄	사기, 공갈, 폭행, 절도, 보이스피싱, 협박, 상해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
	횡령, 배임	
	무면허 운전	선거일부터 15년 이내 총 3회,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
	부정수표단속법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(※회사부도 등 생계형의 경우 고려)
	사·공문서 위조 등	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(※병역기피 :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 받은 경우)
	무고	
	입찰, 공사수주, 일감 몰아주기	
	도박	
명예훼손, 허위사실유포		
병역기피		

[부적격] 심사기준

<p align="center">성희롱</p>	<p>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희롱</p>	
<p align="center">2차 가해</p>	<p>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, 신체적, 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 (※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의3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형사처분 時 (기소유예 포함) ·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 時 (민사 손해배상 포함) · 당 윤리심판원 등으로부터 성희롱·2차 가해·교제폭력으로 제명된 자
<p align="center">교제폭력</p>	<p>교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, 경제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 (※ 스토킹처벌법, 상습폭행, 상해치사 등 교제폭력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)</p>	
<p align="center">직장 내 괴롭힘·갑질</p>	<p>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(※근로기준법 제76조의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속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 時 (민사 손해배상 포함)
<p align="center">학교폭력</p>	<p>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(2025.08.01.)」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퇴학 처분 時 · 형사처분 時 (기소유예 포함) ※본인이 처분을 받은 경우

※ 민주화운동, 노동운동과 관련된 범죄는 예외로 함 (당규 제10호 제17조 3항)

※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 인정 가능 (당규 제10호 제17조 4항)

※ 기존 출마자에 대해서는 심사 시 과거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되, 현재의 부적격 심사기준,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